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공개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순번	계약해지자				주식명	신탁일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비고 (해지일자)
	성명 (관계)	소속	직위	직급 등					
해지사유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 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위의 해당되는 ()에 "√" 표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기재요령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십시오.